

dōTERRA™

**회원 간의 거래 행위 및
미디어 관련 주의 사항**



도테라코리아는 회원 직접판매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건강한 삶을 나누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 회원 간의 금전거래 또는 승급 자격 및 각종 프로모션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주위에 이러한 권유, 교육 또는 사업설명회를 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도테라코리아 윤리강령부로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.

중점 단속 대상

- XX프로젝트, XX플랜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금전을 모으는 행위
- 회원 간에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각출하여 차용하는 행위
- 타사 제품, 서비스, 부동산 또는 협회등을 연계하는 행위
- 승급 자격 및 각종 프로모션 자격 취득을 강요하는 행위
-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 지급
- 대출 강요 및 알선

※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,허가 및 등록&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,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금전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.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되면 [유사수신행위법 제6조]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 시청 공정경제과에서는 대학생 등 구직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다단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.

중점 단속 대상

- ▶ 판매계약 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목적 위력 행사
- ▶ 다단계 판매원 가입·유지 조건 강매 행위
- ▶ 하위 판매원 모집에 경제적 이익 지급
- ▶ 대출 강요 및 알선 행위

도테라코리아는 대학생들의 **다단계판매원 가입 금지 및 허위사실로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**합니다.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모집하거나, 아르바이트를 사칭하여 회원모집을 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 및 제재할 예정 입니다.

앞으로도 도테라코리아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비즈니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IPC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신문, 잡지, TV, 라디오 등 미디어 관련 주의 사항

신문, 잡지, TV,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해 도테라 비즈니스, 사업기회, 제품, 프로모션,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거나 인터뷰를 하실 도테라 회원께서는 아래 '주의사항' 항목을 참고하시고 사전에 관련 된 도테라코리아 방침 및 절차를 윤리강령부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❖ 주의 사항

- 도테라 코리아의 모든 회원은 신문, 잡지, TV, 라디오 등 미디어를 통해 도테라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터뷰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윤리강령부에 알려야 합니다.
- 도테라 회원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프로모션 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을 “도테라 독립 사업자”로 표시하고 로고를 사용 해야 합니다.
- TV 와 라디오, 신문, 잡지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에 윤리강령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회사의 저작물이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쇄 매체나 전자 매체를 통해 공개하려고 하는 회원은 사전에 윤리강령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회사나 회사와 관련된 개인의 이름, 사진이나 이미지, 저작물이나 이에 준하는 자료를 인쇄 매체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공개하려는 회원은 사전에 윤리강령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※ 윤리강령부는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제공 활동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소비자가 오인시킬 수 있는 정보가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상기와 같은 정책을 위반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이 도테라코리아의 제품, 보상플랜 등을 비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